

의안번호	제 483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6년 10월 31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3
----------	-----

제출연월일 : 2016년 10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2016. 7.12)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 개정된 시행령을 반영하여 교환차금·대부료·매각대금의 할부 이자율,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이자율을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35조제2항, 안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제4항, 안 제4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안 제62조, 안 제63조)
 -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일부 조항 삭제에 따른 인용 조항 삭제(안 제28조)
 - 대부료 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대부료 감면규정 추가(안 제32조 제3항 및 제4항)
-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수익매각 사유 정비(안 제40조)
- 토지 평가액 등 평가 가능한 감정평가 자의 범위를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안 제66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및 재원 조달방안 : 해당 없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유재산”을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연 4퍼센트의”를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 4퍼센트의”를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입방미터당”을 각각 “세제곱 미터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 제29조1항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2.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3.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영 제35조제2항2호에 따른 감액은 지역 특산물을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단서 중 “충청북도”를 “도”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이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연 2퍼센트의”를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 4퍼센트의”를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6. 충청북도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

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 6퍼센트의”를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를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연 3퍼센트의”를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40조제3호 본문 중 “1989년 1월 24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서 시 외”를 “농지로서 시·군”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대부받아”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아 5년 이상”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3조 중 “연 4퍼센트의”를 각각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66조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감정평가 법인에”를 “감정평가업자에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u></p> <p>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u>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22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연 4 퍼센트</u>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도내로 이전하기</p>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u></p> <p>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 ----- ----- ----- ----- ----- <u>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공유재산</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2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 ----- ----- ----- ----- <u>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u></p> <p>② ----- ----- ----- -----</p>

현행	개정안
<p>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u>연 4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u></p> <p><u>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 등)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p>----- <u>고</u></p> <p><u>시 이자율을 적용한</u> -----</p> <p>-----</p> <p>-----.</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4. 「<u>외국인투자 촉진법</u>」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u>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u></p> <p>5. <u>도지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u></p> <p>6. <u>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u></p> <p>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략)</p> <p>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1. (생략)</p> <p>2. <u>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u></p> <p>3. ~ 6. (생략)</p> <p>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대</p>	<p>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외국인투자기업</u>----- ----- ----- -----</p> <p>3. ~ 6. (현행과 같음)</p> <p>제30조(채광물채취료 등) ① ----- ----- -----</p>

현행	개정안
<p>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u>입방미터당</u>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p>	<p>----- ----- ----- - <u>세제공 미터당</u> ----- ----- -----.</p>
<p>② 제1항에서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u>입방미터당</u>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p>	<p>② ----- <u>세제공 미터당</u> ----- ----- -----.</p>
<p>③ ~ ⑤ (생략)</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32조(대부료의 감면) ① 「<u>외국인투자 촉진법</u>」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32조(대부료의 감면) ① 「<u>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u>」 제19조 제12항----- ----- ----- ----- -----.</p>
<p>1. ~ 3. (생략)</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생산·연구시설에 대부하는 경우에</p>	<p>③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p>

현 행	개 정 안
<p>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이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 2. (생 략)</p> <p>③ 영 제32조제3항의 경우에는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p> <p>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p>	<p>② ----- ----- --- <u>고시 이자율을 적용한</u> --- -----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④ 제1항 및 제2항 ----- ----- ----- ----- ----- ----- ----- ----- -----.</p> <p>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p> <p>① ----- ----- ----- -----.</p>

현행	개정안
<p>정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잔액에 <u>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u></p> <p>1. ~ 4.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u></p>	<p>-----</p> <p>--- <u>고시 이자율을 적용한</u> ---</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u></p> <p>6. <u>충청북도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u></p> <p><u><삭제></u></p>
<p>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p>	<p>③ -----</p>

현행	개정안
<p>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잔액에 <u>연 6퍼센트의 이자</u>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p> <p>④ <u>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u>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u>연 3퍼센트의 이자</u>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⑤ <u>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u>연 5퍼센트의 이자</u>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p>	<p>----- ----- ----- ----- ----- <u>고시 이자율을 적용한</u> ----- ----- ----- ----- ----- -----.</p> <p>④ <u>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u>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 ----- <u>고시 이자율을 적용한</u> ----- -----.</p> <p><u><삭 제></u></p> <p>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p>

현행	개정안
<p>위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 할 수 있다.</p>	<p>----- ----- ----- ----- ----- ----- -----.</p>
<p>4. ~ 6. (생략)</p>	<p>4. ~ 6. (현행과 같음)</p>
<p>7. 「농지법」에 따른 <u>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로서 시 외의 지역에 위치한 도유지를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대부받아</u> 계속하여 직접 경작 중인 자에게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매각할 수 있다.</p>	<p>7. ----- <u>농지로서 시·군</u> ----- <u>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아 5년 이상</u> ----- -----.</p>
<p>제40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연 4퍼센트의</u>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40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 -----. ----- ----- <u>고시 이자율을 적용한</u> ----- -----.</p>

현행	개정안
<p>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u>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감정평가 법인</u>에 의뢰한다.</p>	<p>----- . ----- ----- ----- ----- ----- 「<u>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u>」----- -----<u>감정평가업자</u>에게----- ----- .</p>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2.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6.7.12.>

□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① 영 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1조 및 제82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월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제2항의 고시이자율을 적용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삭제 <2016.7.12.>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 대장가격이 3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등) ⑫ 제10항 및 제1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6.11., 2016.7.28.>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12.>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2016.7.12.>

1.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3. 삭제 <2016.7.12.>

③ 삭제 <2016.7.12.>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4., 2013.6.21., 2016.7.12.>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4.7.7., 2016.7.12.>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6.7.12.>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
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
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
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수의매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
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
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 매각을 할 수 있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등)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6.7.12.>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6.7.12.>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2016.7.12.>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1., 2016.7.12.>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